



HAEUNDAE COUNTRY CLUB BYLAW

해운대컨트리클럽 회 칙

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

당 클럽은 “해운대 컨트리클럽”(이하 “클럽”이라 한다.)이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“HAEUNDAE COUNTRY CLUB”이라 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당 클럽은 “해운대 컨트리클럽”(이하 “회사”라고 함)이 소유·경영하며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상호간 친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체육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소재지)

당 클럽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병산2로 265번지에 두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연락사무소를 둔다.

제 2 장 회원

제 4 조 (모집인원)

당 클럽이 모집하는 총 정회원수는 900구좌로 한다.

제 5 조 (회원의 종류)

당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.

1. 정회원(개인 및 법인회원)
2. 가족회원
3. 명예회원
4. 특별회원
5. 외국인회원
6. 기타회원

제 6 조 (회원의 자격)

1. 정회원

정회원은 당사가 정한 회칙, 이용약관을 준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입회수속을 필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개인 및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.

2. 가족회원

가족회원은 당 클럽의 정회원이 지정, 당 클럽에 등록된 자로서 회사가 규정한 바에 따라 대우를 받는다.

3. 명예회원

명예회원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사가 승인한 자로 하며, 회사가 정한 규정의 대우를 받는다.

4. 특별회원

특별회원은 당 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사가 승인한 자로 하며, 회사가 정한 규정의 대우를 받는다.

5. 외국인회원

외국인회원은 외국 국적소유자(외국법인 포함) 및 한국 국적소유자라도 국내 주소가 없는 개인으로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입회를 승인한 자로 한다.

6. 기타회원

기타 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하며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은 회사가 정한다.

제 3 장 회원의 운영 및 관리

제 7 조 (입회)

당 클럽의 입회 희망자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입회금을 납입하고 회원증을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.

제 8 조 (입회금)

1. 입회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입회 일로부터 7년간 무이자로 거치하고 탈퇴 및 제명시 입회원금만 반환한다. 단, 경영상의 이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.
2. 외국인회원은 입회시의 원회금액에 의한 원화를 반환한다.
3. 중도 탈퇴 및 제명시 입회금 반환은 거치기간으로 한다. 단,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과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.

제 9 조 (회원권의 양도, 양수)

1. 양도 등 특정승계로 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. 당 클럽은 회원권의 양도, 양수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.
3. 회원권의 양도 등 특정 승계, 법인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의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서 정한 명의개서료를 지불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하기로 한다.

제 10 조 (입회자격의 승계)

1. 정회원이 사망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이 회원증서를 첨부해서 소정의 절차로 명의개서료를 지불하고 상속인 가운데 1인이 회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.
2. 법인회원의 경우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합병법인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으며 소정의 명의개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자격의 제한 및 제명)

회원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로써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.

1. 본 회칙 및 이용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
2.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 - * 내기 도박, 지나친 음주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
 - * 경기보조원, 직원에 대한 희롱, 욕설, 폭행을 하였을 경우
3. 골프장 질서를 대단히 문란하게 할 때

4.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5. 회비 등 기타 납입의무를 3개월 이상 지체하고 2회 이상 청구가 있어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
6. 파산선고를 받거나 임회금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받고 1개월이 된 때
7. 주소변경 또는 회원의 신상변동 등의 신고를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때
8. 회사가 정한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
9. 무기명 카드 및 무기명 쿠폰을 타인에게 금품을 받고 판매 및 알선하였을 경우
10. 회사가 정한 규정을 불이행하였을 경우

제 12 조 (회원자격의 상실)

회원은 다음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회원권 양도, 증여 등으로 권리상실한 경우
2. 탈회
3. 제명
4. 사망
5. 법인회원의 경우 해당법인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한 소멸

제 13 조 (이용제한)

회사는 천재지변, 국가 사회의 현저한 변화 및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14 조 (탈회)

1.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임회일로부터 제8조의 거치기간 내 탈회를 요청할 수 없다.
2. 회원이 탈회를 희망할 경우 소정의 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

제 15 조 (회원의 권리)

1. 회원은 당 클럽이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 클럽 내 부대시설을 일반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.
2. 회원은 당 클럽이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에 참가 할 수 있으며 클럽이 간행하는 각종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.
3. 회원은 당 클럽이 행하는 공식 핸디캡 심사를 받을 수 있다.

제 16 조 (회원의 의무)

1. 회원은 본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약관 및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
2. 회원은 주소, 직장, 기타 회원명단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
3.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수 없다.
4.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5. 회원은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

제 17 조 (이사회)

1. 당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함은 경원개발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지칭하며 그의 결과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다.
2.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18 조 (운영위원회)

1. 당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
2. 운영위원회의 보조 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.

제 6 장 객원(Visitor)

제 19 조 (객원의 정의)

객원(Visitor)은 회원이 자기책임 하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반 또는 소개한 자를 칭한다.

제 20 조 (제요금의 납입)

1. 객원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이용료를 지불한 후 클럽의 시설을 이용할수 있다.
2. 객원이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소개한 회원에게 위약금 청구와 함께 일정 기간의 예약 정지 및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 7 장 기타

제 21 조 (경기규칙)

당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.

제 22 조 (Local Rule 및 임시규칙)

당 클럽은 필요에 따라 Local Rule과 임시규칙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및 개정을 운영위원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한다.

제 23 조 (준용)
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1.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행한다.
2.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위원회 임무는 회사의 이사회가 이를 대행한다.
3. 본 회칙은 당 클럽의 개장일로부터 시행한다.

Golf is Life and harmony with nature

